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계획수립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개인정보 유출 시 소송 및 분쟁 조정, 기타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
4. 개인정보 유출 통제 및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
5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6. 개인정보보호 규정 이행 상태 및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전산정보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교무팀장, 학생지원팀장, 입학팀장, 연구협력팀장, 취업지원팀장, 대학원 행정실장, 학술정보팀장, 전산정보전략팀장, 비행교육원 기획총괄팀장, 국제문화원 팀장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총무팀장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은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소집)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제6조 (의결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준용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